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4. 2. 2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희 의원 외 8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장정희 의원 외 8명
- 제안일 : 2024. 2. 16.
- 회부일 : 2024. 2. 20. (의안번호 : 24-12)

2. 제안이유

-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요청 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조치 사항(안 제5조)
-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제3조,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 입법예고: 2024. 2. 14. ~ 2. 20.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마포구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본 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최근 오염수 해양 방류논란에 따른 학교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서울시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대 검사하고 있음.
- 주요 제정 내용
 - 가. 안 제4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요청 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안 제5조에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조치 사항을 규정함.

다. 안 제6조에는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및 자치구 14개 제정 완료

(‘24. 2월 기준)

연 번	지 역 명	조 례 명	제 정 일 자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3.10.10.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4.7.17.
3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3.12.12.
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4.7.17.
5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 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14.9.24.
6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2015.4.23.
7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15.12.29.
8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2018.3.5.
9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2.2.24.
10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2022.12.28.
11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5.25.
12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 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6.
1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에 관한 조례	2023.9.27.
14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2.

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추진사업으로는 검사비 등 지원(구로구), 간이검사장비 구매 지원(성동구) 등이 있음
 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련 주민조례 발안
 (제정: 강서구, 부결: 송파구· 광진구)

자치구	결 과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 23. 11. 상임위 수정 가결, 23. 12. 28.제정 서울시교육청 조례와 중복 문제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함
송파구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 주민청구조례안 23. 5. 상임위 부결(반대 6, 찬성 1) 부결사유: 서울시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 방사능 정밀검사체계 존재, 샘플검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실효성 없음
광진구	방사능 안전급식 관련 주민청구조례안 23. 4. 상임위 부결(반대 5, 기권 1) 부결사유: 다른 자치구에도 조례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예산낭비 요인 있음, '방사능'이란 단어로 위압감 불안감 증폭

○ 방사능 검사 관련 기존사업 및 참고자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미생물 검사	식품접촉표면검사	연중 (연 1회)	급식학교 전체 (비조리교 제외)	칼, 도마, 식판 또는 배식받트	대장균 살모넬라
	HACCP 검증검사		표본학교	조리식품 2종 식품접촉표면 4종 식품비접촉표면 2종 조리용장갑 1종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식중독균 검사		표본학교	조리식품 2종	식중독균 9종
방사능 정밀검사* (서울시 협력)		4~11월	표본학교	수산물, 농산물 등 식재료	요오드 세슘

※ 방사능 정밀검사의 경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음

나.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구분	품목별 검사항목	세부내용
생산단계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축산물: 한우 유전자, 항생물질 등 수산물: 방사능, 중금속 검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농산물: 연 1회 전수검사(농산물품질관리원), 납품 전 전수검사(검사기관) 축산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제 수산물: 납품 일주일 전 전수검사(검사기관)
유통단계 (친환경유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산물: 표본검사 14건/일(친환경유통센터) 일반농산물: 표본검사 130건/일 생산자·품목별(친환경유통센터) 센터 부적합 농산물: 정밀검사(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산물: 연4회 수거검사(서울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 연9회 수거검사(보건환경연구원)
소비단계 (학교급식시설)	조리식품: 식중독균	연 2회 수거검사(서울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구입단계(1차 검사), 수산물 납품업체(자체 검사), 친환경유통센터, 보건환경연구원까지 4중으로 방사능 관리 추진 중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방사능 기준		
핵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요오드	모든식품	100 이하
세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식품	100 이하
중금속 기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종류에 따라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을 검사하며 대상에 따라 기준 상이함		

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신청자격: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서울소재 시민 단체
- 대상식품: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
- 검사 수수료: 없음(무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최근 오염수 해양 방류논란에 따른 학교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필요성 확대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을 제안하는 등 국민들이 식품에 대한 불안한 인식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있어서 학생급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유통단계에서 이미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하는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는 전문가 의견(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과 통상 사용되는 간이검사장비는 미량의 방사능까지는 검출하지 못한다는 단점,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가 시행중,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구입단계(1차 검사), 수산물 납품업체(자체 검사), 친환경유통센터, 보건환경연구원까지 4중으로 방사능 관리 추진 중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사업과 중복 우려로 사업추진 시 실효성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66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1. 8. 4.>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